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개정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2000. 2.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있어 주민들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항목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상황의공개사항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주민들에게 재정운영상황공개를 제한하는 항목중 “추진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실 ☎ 940-4061
입안자	기획실장	이춘기
	예산담당	유종호
	담당자	이성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6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u>삭 제</u>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기타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